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86호

금융투자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상 호 : (가칭)삼성액티브자산운용(주)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3-11-1	집합투자업	증권,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3. 인가조건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3-11-1의 경우 삼성자산운용(주) 분할승인('16.11.30. 승인)의 분할 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업무에 한함

4. 인가일 : 2016. 12. 28.